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77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

발 의 자 : 이광희 · 김문수 · 이재강
김우영 · 민병덕 · 임미애
이재관 · 박홍배 · 양부남
장종태 · 이해식 · 김상욱
문금주 · 이강일 · 조계원
김 윤 · 박지원 · 이상식
안태준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

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간”을 “재판의 확정이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중 “이유”를 “이유(공개 청구한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가 불가능한 구체적 이유와 입증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판의 기록은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비식별 처리의 기준은 대통령령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공개 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재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확정된 재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생략)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u>기간</u> 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 <u>재판의 확정이나 기간</u>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 ④ (생략)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u>이유</u> 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 ----- ----- ----- ----- ----- ----- ----- ----- ----- ----- <u>이유(공개 청구한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가 불가능한 구체적 이유와 입증 자료를 포함한다)</u> -----

제14조(부분 공개) (생략)

<신설>

----.

제14조(부분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판의 기록은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비식별 처리의 기
준은 대통령령 및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